

진정서

제 목 : 유산유도제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요구 및 신속 도입을 위한 식약처의 책임 촉구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진정 내용 -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과거 30년 전부터 최근 허가된 일본을 포함하여 95개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의 한 방법입니다. 한국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유산유도제가 허가되지 않아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기본적인 인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는 권리임에도 시민들은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산유도제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 검색사이트나 SNS에서는 유산유도제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식적 유통은 약물의 품질이나 유통과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건강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약품은 허가신청을 철회했고, 다른 제약사들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유도제는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처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며,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며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러한 필수약품의 안정공급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약물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표 김나영과 함께 식약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 성분 의약품의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의약품안전규칙' 57조에 따른 긴급도입을 포함하여 유산유도제의 신속한 도입을 요구합니다.

2023년 월 일

민원인 (서명)

연락처

주소 (동 까지)